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4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성주군의 당면한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, 가야산야생화생태식물원조성사업, 가천지방상수도사업등 공공시설물들이 완공되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, 운영할 신규행정 인력확보를 위하여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정원조정 526 → 535(증9명)

. 집행기관 516 → 525(증9명)

. 의회사무과 10(변동없음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과 같음

4. 신.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5.참고사항

○신규시설 신규인력 정원조정안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526"을 "535"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"516"을 "525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총수)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2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. 집행기관 : 516명 2 (생략)	제2조(정원의총수)535 1..... : 525 2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